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 경호공무원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연장 등〉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07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훈 · 강대식 · 김소희 ·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 권영진 · 신동욱 · 이현승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 의안번호 : 970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하여 연장하고,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정년연장 관련)

구 분		현 행	개정안(자녀 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연령 정년	5급 이상	58세	58세	59세	60세	61세
	6급 이하	55세	55세	56세	57세	58세
계급 정년	2급	4년	4년	5년	6년	7년
	3급	7년	7년	8년	9년	10년
	4급	12년	12년	13년	14년	15년
	5급	16년	16년	17년	18년	19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제11조(정년) ① ----- -----. 1. ----- 가. 5급 이상: 58세. 다만, 자녀가 2명인 경호공무원은 59세, 자녀가 3명인 경호공무원은 60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경호공무원은 61세로 한다. 나. 6급 이하: 55세. 다만, 자녀가 2명인 경호공무원은 56세, 자녀가 3명인 경호공무원은 57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경호공무원은 58세로 한다. 2. 계급정년. 다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 ~ 라.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u>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더한다.</u>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① 처장은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상 경호공무원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데, 연령정년의 경우 5급 이상은 58세, 6급 이하는 55세이며, 계급정년의 경우 경호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계급 간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2급은 4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 5급은 16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다자녀양육자,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 현재 경호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는 다자녀 출산 및 양육과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한 승진 우대나 정년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됨.

최근 5년간(2020~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약 8천명, 합계출산율 0.03명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출생아 수는 약 23만 8천명,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표-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20~2024년)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²⁾
출생아 수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43
합계출산율 ¹⁾	0.84	0.81	0.78	0.72	0.75

주: 1)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 2024년도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생산 가능인구 감소, 사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 약화, 국가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출산·양육 장려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정안은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경호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승진, 정년 등 인사상 우대조치의 기준으로 자녀의 유무나 자녀 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불임이나 건강상 문제 등 비자발적 요인에 따른 무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²⁾, 개정안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과 같이 자녀 수를 정년 연장 요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미성년자 여부 등), 양육권 보유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며, 자녀의 수는 출생이나 입양 등으로 증가하였다가 사망이나 파양 등의 사유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국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개정안의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 방향과 각 직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표-4]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관련 법률안 현황

(의안번호 순)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소관 상임위
1	국가공무원법	제2209706호	2025. 4. 10. / 2025. 4. 11.	행정안전위원회
2	지방공무원법	제2209708호		행정안전위원회
3	외무공무원법	제2209709호		외교통일위원회
4	경찰공무원법	제2209710호		행정안전위원회
5	소방공무원법	제2209711호		행정안전위원회
6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09712호		정보위원회
7	군무원인사법	제2209714호		국방위원회
8	교육공무원법	제2209715호		교육위원회
9	군인사법	제2209716호		국방위원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정년 연장의 경우 경찰 및 소방 등 여타 특정직 공무원(60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정년(58세)이 적용되고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이탈하게 되고, 경호 전문 기관으로서의 조직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년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다자녀 경호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경우에는 조직 내 인사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사기 저하 및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문화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기관 차원이 아닌 전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16